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합530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김갑수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2.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 2.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206,000,000원, 보증기한 2022. 12.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이를 담보로 2015. 3. 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3. 10. 18. 보증금액 425,000,000원(그 후 363,375,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10. 17.(그 후 2020. 10. 8.까지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9. 9. 24. 보증금액 8,500,000원, 보증기한 2020. 9. 2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D의 대표자인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D은, 위 ① 기재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위 ② 기재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9. 10.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57,375,000원, 보증기한 2020. 10. 1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자인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F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F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7,500,000원을 대출받았다(위 1), 2), 3)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정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1. 1. 25. C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66,959,507원을(2020. 8. 2. 연체 발생), 2021. 1. 22. D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72,727,893원을(2020. 8. 11. 연체 발생), 2021. 2. 3. D을 대위하여 E은행에 8,636,729원을(2020. 8. 27. 연체 발생), 2021. 1. 22. F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58,277,347원(2020. 8. 18. 연체 발생)을 각 변제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20. 8. 31. 피고 A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1. 피고 A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은 2020. 8. 3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1. 피고 B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2. 4. 28.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3억 700만 원,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각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2카단200944호)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 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38,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각 대출원리금 변제가 연체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1년 1월경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제1의 가. 5)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나) 갑 제4, 6 내지 10, 17 내지 21, 23, 26 내지 29, 31 내지 3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아래 기재 내용만으로도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이나 아래 기재 외의 나머지 소극재산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적극재산 합계 6,423,754,450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 : 3,795,418,670원(갑 제14호증)

(2) 의정부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1,313,306,680원

(3) 춘천시 I, J, K 토지 및 위 I, K 지상 건물 : 1,314,274,500원

(4) 춘천시 L 토지 : 125,800원

(5) 춘천시 M 토지 : 628,800원

[소극재산 합계 7,584,139,258원]

(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 3,885,755,223원

㉠ ① C 본인 대출 원금 2,079,995,636원(=㉡ 2018. 12. 31.자 미수 원금 7억 4,000만 원+㉢ 2015. 3. 2.자 미수 원금 1,339,995,636원, 갑 제17호증)+㉣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원금 1,745,634,587원(=㉤ 2019. 9. 11.자 대출 미수 원금 229,977,788원+㉥ 2013. 10. 18.자 대출 미수 원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예정액을 제외한 64,125,000원+㉦ 2016. 6. 7.자 대출 미수 원금 5,000만 원+㉧ 2016. 8. 12.자 대출 미수 원금 2억 6,700만 원+㉨ 2018. 9. 21.자 대출 미수 원금 3억 원+㉩ 2019. 5. 31.자 대출 미수 원금 3억 7,000만 원+㉪ 2016. 5. 11.자 대출 미수 원금 464,531,799원, 갑 제20호증)+㉫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원금 60,125,000원(=㉬ 2019. 4. 26.자 대출 미수 원금 5,000만 원+㉭ 2019. 10. 18.자 대출 미수

원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예정액을 제외한 10,125,000원, 갑 제21호증)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1,771,112,253원(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1,829,077,000원 +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본인으로서의 대출채무 연체금액 7억 4,000만 원 -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합계 797,974,747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C 본인의 2021. 1. 20. 기준 연체액 합계 2,973,540,000원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대출금 연체금액 7억 4,000만 원 뿐만 아니라, C 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2015. 3. 2.자 대출 미수 원금 1,339,995,636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1, 12호증은 신용정보조회서 중 일부만 출력된 것으로서 위 1,339,995,636원에 대한 기재가 제출된 증거상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2021. 1. 20. 기준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액은 위 인정금액을 상회하는 3,909,072,636원(= 위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1,829,077,000원 + 위 본인 채무 7억 4,000만 원 + 위 본인 채무 1,339,995,636원)에 이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에서 제외시킨 금액만 소극재산으로 계산하여 이중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원고의 대위변제예정액으로서 제외시킨 부분만 계상한다) : 420,750,000원[=㉠ 위 2013. 10. 18.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63,375,000원(갑 제20호증) + ㉡ 위 2019. 10. 15.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57,375,000원(갑 제21호증)]

(3) N조합에 대한 채무 : 대출 원금 5억 원(갑 제18호증)

(4) O에 대한 채무 : 3억 5,000만 원(갑 제19호증)

(5) P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 2019. 5. 30.자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기한 사채금 3억 2,000만 원(갑 제4호증)

(6) Q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 2019. 10. 24.자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기한 사채금 5억 5,000만 원(갑 제4호증)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11. 22.자 대출 미수 원금

5,000만 원(갑 제23호증)

(8) R조합에 대한 채무 : 대출 원금 2,000만 원(갑 제26호증)

(9) S조합에 대한 채무 : 대출 원금 5억 9,000만 원(갑 제11, 28호증)

(10) 원고 A에 대한 채무 : 3억 600만 원(을 제4호증)

(11) 원고 B에 대한 채무 : 7,000만 원(을 제6호증)

(12) 국세(남양주세무서) 채무 : 3,000만 원(갑 제12, 29호증)

(13) T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 1,000만 원(갑 제33호증)

(14) 주식회사 U에 대한 채무 : 2,000만 원(갑 제33호증)

(15)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 대출 원금 351,634,035원(갑 제34, 35호증)

(16) V에 대한 채무 : 1억 1,000만 원(갑 제36, 37호증)

2) C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추정

가) 채무자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표인 C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가 퇴직 무렵이 되어서야 근저당권설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퇴사 무렵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C과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들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C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156,629,393원(=대위변제원금 합계 806,601,476원1) - 배당액 합계 649,972,083원) 이외에도 Q 유한회사, P 유한회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R조합 등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권을 주장한 사실, 위 채권자들의 배당 후 잔여채권액과 원고의 잔여채권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상회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위 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각 배당금지급채권(별지2 기재와 같다)을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각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이인경, 판사 박동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남양주시 W 대 995㎡

2. 남양주시 W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331.2㎡

2층 331.2㎡

3층 132.48㎡

3. 남양주시 W, X, Y Z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480.51㎡

지1층 144.16㎡

1층 256.75㎡

2층 249.87㎡

3층 232.87㎡

옥탑1층 19.21㎡

4. 남양주시 Y 전 274㎡

5. 남양주시 X 답 345㎡, 끝.

별지2

채권의 표시

1. 피고 A가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307,000,000원의 배당금(공탁금)지급채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
2. 피고 B이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70,000,000원의 배당금(공탁금)지급채권 및 그 공탁금의 이자. 끝.

1) 계산의 편의상 대위변제원금 합계액만 계산한다.